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0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26.

발 의 자 : 박성민 · 이명수 · 서일준
이현승 · 정동만 · 김승수
정경희 · 전봉민 · 서정숙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(細項) 및 목(目) 경비로 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고, 지방공기업에도 예산의 전 과정을 사업 중심으로 편성·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 중이므로 현행법의 예산 과목구분을 해당 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그 밖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(안 제29조 등).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중 “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(科目)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(細項) 및 목(目) 경비를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”로 한다.

제40조제2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제1항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출자법인에 대한 관리) 공사는 제5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예산의 전용)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<u>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(科目)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(細項) 및 목(目) 경비를 전용(轉用)할 수 있다.</u>	제29조(예산의 전용) ----- -----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<u>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-----.</u>
제40조(중요 자산의 취득·처분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 <u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</u> 」 제10조제1항 및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	제40조(중요 자산의 취득·처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「 <u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</u> 」 제10조의2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54조의2(출자법인에 대한 관리) <u>공사는 제5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
<신 설>	